



제3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이수련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4. 1. 16.

**자치행정위원회**

#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이수련 의원 등 열 한분의 의원께서 발의 하여 같은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교육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의 사회참여와 적응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등(안 제1조~제3조)
- 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다.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라.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9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 다. 관련부서 : 미래교육과
- 라. 입법예고 : 2024. 1. 16.(7일간) /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자립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안 제3조에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에 필요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토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과 위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인과 그 가족에 대한 관심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타당한 조례안이라 여겨지며, 조례 운영 부서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의 현황 파악의 어려움이 있기에 본 조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홍보에 각별히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사항

※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 현황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총 43개

· 광역 13개

(서울, 경기, 강원, 전북, 충남, 충북, 제주, 세종, 울산, 인천, 대구, 부산, 광주)

· 기초 30개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등)

<표> 주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 (2024. 01. 02. 현재)

연번	지자체	조례명	제·개정일
1	경기도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21.
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0. 10. 5.
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3. 10. 4.
4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2. 10. 31.
5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21.
6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9. 27.
7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3. 2. 7.
8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3. 11. 10.
9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3. 13.
10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31.
11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29.
12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0. 24.
13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3. 4. 19.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4. 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

나. 재정 수반 요인

-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 맞춤형 학습지도, 사회적응, 직업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지수(IQ)가 71~84에 속하여 지적장애 범주보다 높지만 평균적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학습부분, 또래관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를 말하며 장애인으로 구분되지 않아 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해 개인의 정보 동의가 필요하며 따로 심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비용 추계가 어려움.
- 경기도 평생교육과-9232(2023.7.23.)호 사업안내에 따라 10개의 시군에 3억을 지원하는 공모사업(도비 30, 시비70)으로 심리검사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간접적으로 특정가능하여 도내 1개 시군당 30,000천원 정도 편성(도 9,000천원, 시21,000천원) 예상되므로 현 조례 제정에 의해 수반되는 추가 비용은 1억 미만으로 추정됨

-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5조(기능)에 따라 평생학습센터를 지원 센터로 활용 가능함. 따라서 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은 따로 수반 되지 않고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와 심리 검사비는 위와 같음

#### 4. 작성자

문화교육국 미래교육과 이유미